

풀무원건강생활

# 공정거래가이드북 소비자보호부문



##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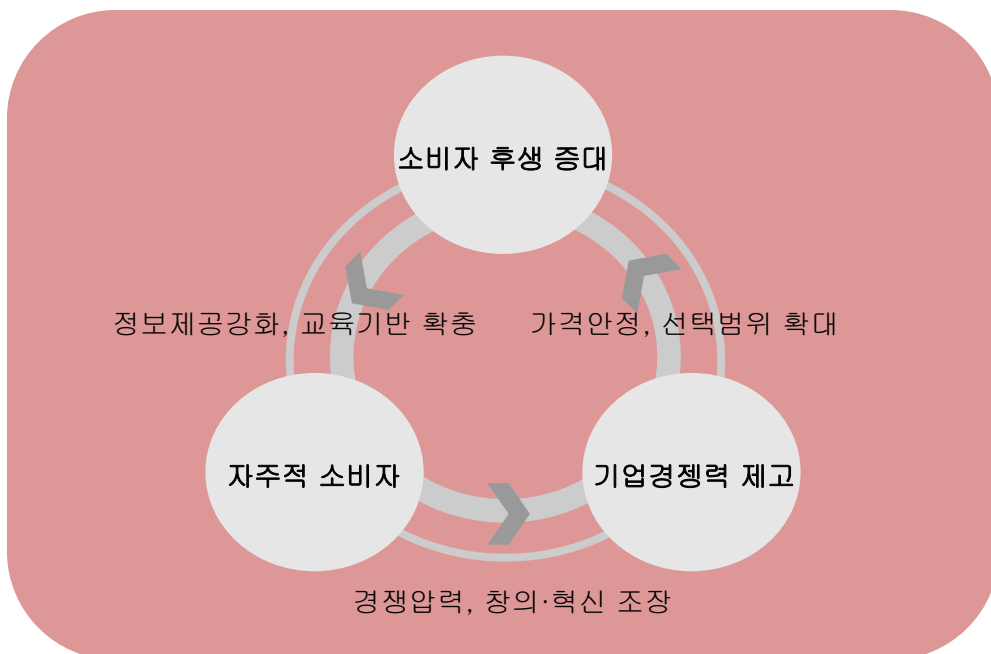
### 소비자보호법이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 및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각종 법률

#### ▪ 소비자보호법의 종류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 ☞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할부거래법

###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표시?

☞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 광고?

☞ 전단·팸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 따라서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휴대전화 광고에서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 광고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아니함

##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①허위·과장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영 제3조 제2항)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사실의 은폐 "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또는 숨기는 것을 말함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표시·광고 업무시 유의사항

### 풀무원의 표시심의 체계

회사에서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표시사상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풀무원의 정체성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무원의 모든 제품은 출시전 표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표시심의의 필요성

#### ▪ 표시심의의 목적

- ☞ 심의를 요청한 표시가 국내 표시기준과 관련된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부합여부 검토
- ☞ 풀무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브랜드 원칙, 풀무원 자체 임의 표시기준, 풀무원 첨가물공전 등)의 적합성 확인
- ☞ 풀무원 대외표방 원칙 및 이미지 합치성 확인

#### ▪ 심의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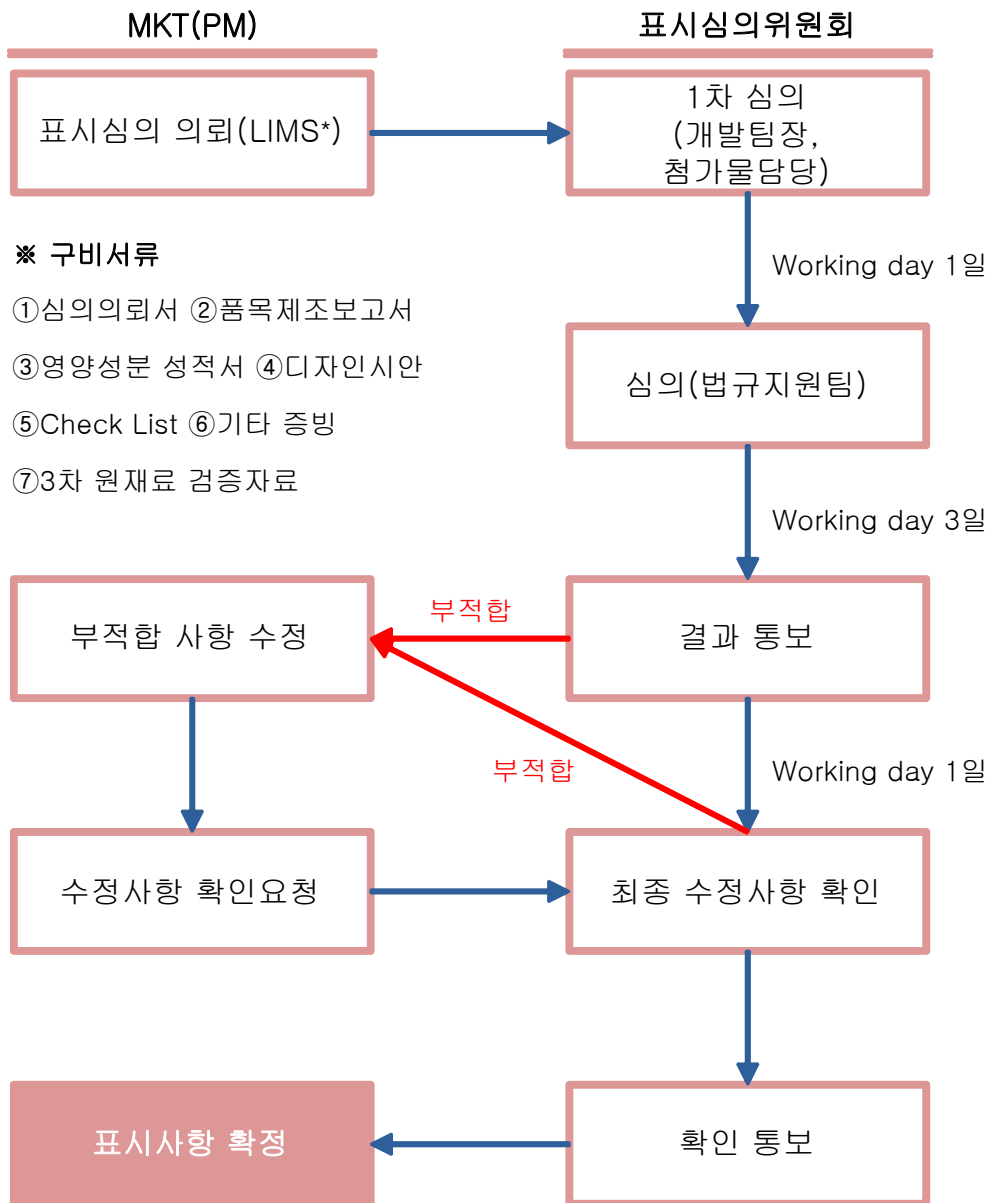
- ☞ 풀무원 각 법인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심의위원회 위원장 : 법인CEO
- ☞ 심의위원회 간사 : 식문화연구원장
- ☞ 심의위원회 부간사 : 법규지원팀

#### ▪ 심의의 대상

- ☞ 풀무원의 로고가 인쇄되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
- ☞ 풀무원 로고가 인쇄되는 OEM(ODM), 임가공 제품

# 표시·광고 업무시 유의사항

## 표시심의 프로세스



\*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 표시·광고 업무시 유의사항

### 표시심의 근거법령 및 점검항목

근거 법령	세부 고시	점검항목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li> <li>☞ 내용량</li> <li>☞ 식품의 유형</li> <li>☞ 제조년월일/유통기한</li> <li>☞ 원재료명 및 함량</li> <li>☞ 성분명 및 함량</li> <li>☞ 업소명 및 소재지</li> <li>☞ 영양성분</li> <li>☞ 주의사항</li> <li>☞ 기타 표시사항</li> </ul>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 HACCP 인증 마크
농축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 원산지
자원의 활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 분리배출
친환경농어업법		☞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 표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 업무시 유의사항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 ▪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 ☞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Must not do these

- ☒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소비자가 실존하지 않을 경우
- ☒ 추천·보증하는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 ☒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렸으나 해당 유명인이 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 ☒ 전문가가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광고 업무시 유의사항

###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소비자(유명인, 전문가)와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함

####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 ☞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저는 위 상품을 추천하면서 풀무원건강생활(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습니다.
-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 Must not do these

- ☒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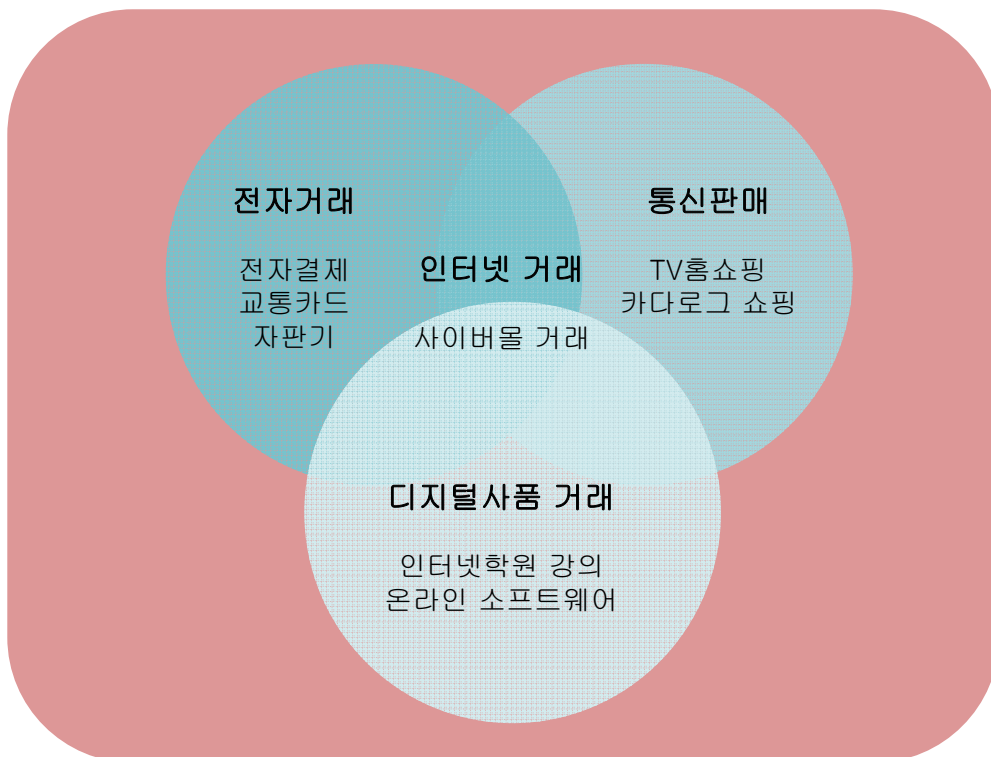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법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라는 고유의 특성 상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대금결제 후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배송 등 사고발생 우려가 큰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의 범위



# 전자상거래 업무시 유의사항

## 전자상거래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영업개시 전

청약

청약의 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 ☞ 상호(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 ☞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업무시 유의사항

## 전자상거래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영업개시 전

**청약**

청약의 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청약을 유인하고자 하는 경우(표시·광고)

### 자기신원정보의 표시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영업개시 전 몰 메인페이지 하단에 자기신원 정보와 관련한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 주의



### 자기신원정보 기재 예시

풀무원건강생활(주) 대표이사:○○○ 대표전화:02.2186.85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120-85-32517  
통신판매번호:2003-충북증평-00003[[사업자정보확인 바로가기](#)]  
풀무원건강생활(주) 서울지점: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2층

# 전자상거래 업무시 유의사항

## 전자상거래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영업개시 전

**청약**

청약의 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청약시 고지사항

- ☞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 ☞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전자상거래 업무시 유의사항

## 전자상거래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영업개시 전

청약

**청약의 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은 반환받은 경우

### ▪ 대금의 환급

- ☞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 반환 배송비의 부담

-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주의

공정한 거래는 바른마음경영의  
실천입니다.

##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 방문판매법이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 후원방문판매

☞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고 방문판매의 형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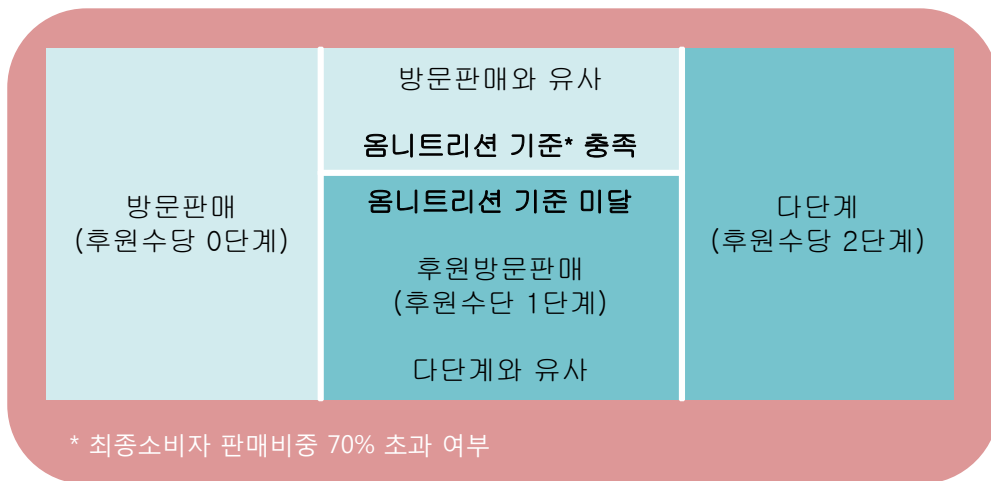
#### ▪ 다단계판매

☞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방문판매 vs. 후원방문판매 vs. 다단계판매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사항

####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

-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에 주의

#### ▪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 ☞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명부에는 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목록

- ☑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의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 거래에 관한 약관
-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

### ▪ 계약서 교부의무

- ☞ 방문판매업자는 상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 주의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 ☞ 소비자는 계약서의 교부일이나,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 청약철회의 의사를 접수하고, 상품은 반환받은 경우 반환일로 부터 3영업일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 주의



###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Must not do these

- ☒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방문판매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학습 등을 강요하는 행위

## 방문판매업법 위반 Check List

위반유형	점검사항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가?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들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고 있는가?
청약철회등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청약을 철회해 주는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는 없는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없는가?
금지행위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없는가?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는 없는가?
	목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가?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없는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없는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없는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없는가?

---

공정거래가이드북 소비자보호 부문

발행처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로즈데일빌딩 201)



*Pulmuone*

풀무원건강생활